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-23호

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회계정보"를 "회계정보(분·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)"로, "한다) 또는"을 "한다),"로, "한다)에게"를 "한다)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"로, "조치하는데"를 "조치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0조에 따른 분·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)하는데"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증선위 또는 감독원장에게"를 "증선위, 감독 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"로 한다.

제6조제1항, 제2항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"감독원장은"을 각각 "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감독원장은"을 "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감독원장은"을 "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"으로 한다.

제12조 중 "감독원장은"을 "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·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분·반기 재무제표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안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포상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----금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 ----- 회계정보(분·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 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한다)----"증선위"라 한다) 또는 금융감 ----- 한다), ----독원장(이하 "감독원장"이라 한 다)에게 신고한 자(이하 "신고 한다)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"라 한다)로서 증선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 ----- 조치(「자본시장과 금 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세160 다. 조에 따른 분・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 한다)하는데 -----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5조(신고의 방법) 영 제31조제1 제5조(신고의 방법) -----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, 우편, 모사전송(FAX)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 법에 의하여 증선위 또는 감독 ----- 증선위, 감독원장 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-----

1. · 2. (생략)

제6조(신고 접수 및 처리) ① <u>감독</u>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 순서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접수 대장(별지 1호 서식)에 기록・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<u>감독원장은</u> 신고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 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<u>감독원장은</u>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
1. ~ 6. (생략)

④ <u>감독원장은</u> 매 분기별로 부 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 역을 증선위 위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결정) ① (생 략)

② <u>감독원장은</u>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신고 접수 및 처리) ① <u>감독</u>
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
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
사회는
· ③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
사회는
<u> </u>
 1 <i>C (</i> 청체되 가야)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
<u> 사회는</u>
제8조(포상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
<u> 사회는</u>

제9조(지급방법 및 절차) ① <u>감독</u> 원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12조(권한의 위임 등) <u>감독원장</u> 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방법 및 절차) ① <u>감독</u>
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
·.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권한의 위임 등) <u>감독원장</u>
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